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165 발의연월일: 2021. 8. 23.

발 의 자: 박완주・오영환・홍기원

김성주 · 정정순 · 이원욱

문정복・김남국・설 훈

유기홍 • 이정문 • 문진석

민병덕 · 김정재 · 서영석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10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한해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음. 이에 비해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대도시 특례에따라 도시개발계획 수립 등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연구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출연기관 설립에 비해 지방연구원의 설립기준이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지방연구원의 설립 기준을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로 완화하여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유도하고, 사업계획·인력·재무 등기본사항 외에도 연구과제 실적을 공시하도록 하여 연구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100"을 "50"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경영공시)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 1항에 따른 경영공시 사항
 - 2. 연구보고서, 수탁연구과제 등 연구과제실적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생	제4조(설립 및 등기 등)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2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주민 수를 말한다) <u>100</u> 만 이상	<u>50</u>
의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	
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18조의2(경영공시) 지방연구원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u>한다.</u>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2조제1항에 따른 경영공시
	사항_
	2. 연구보고서, 수탁연구과제 등
	연구과제실적